

#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2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“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 사업”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대상을 정하고,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기술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(안 제2조).
- 나. 공공건축물 및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건축물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 대상을 정함 (안 제4조).
- 다.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(안 제6조).

## □ 제정조례안 : 별 첨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 첨

- 수도법 제11조의3,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,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3.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입법예고 : 2005. 1. 28. ~ 2005. 2. 16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별 첨

표준조례안(경기도)

# **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**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시장의 책무)** ①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야 하며, 물을 다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.

**제3조 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빗물이용시설”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·조경용수·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서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.
2. “대단위 개발(건축)계획”이라 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, 「택지개발 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, 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·주택재개발사업·주택재건축사업, 「주택법」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·대지조성사업 등을 말한다.

**제4조 (권장설치 대상)**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1. 안산시에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
2.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하여 건립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3.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
#### 4.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 및 건축물

**제5조 (설치신고 및 확인)**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

2.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빗물이용시설의 확장

2. 빗물이용시설의 운전중지

3. 사업자 변경

4. 기타 빗물이용시설 관련 사항의 변경

④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관련 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

**제6조 (수도요금의 감면)**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당해 시설물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당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감면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상한으로 한다.

1. 가정용 : 65퍼센트

2. 업무용, 영업용, 대중탕용, 전용공업용 : 25퍼센트

**제7조 (빗물이용시설의 관리)** ①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유지·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빗물이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  2. 송·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.
  3.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“빗물사용”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 4. 빗물의 사용량,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,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량기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5. 빗물이용시설의 운전기록 등 관련 서류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- ②빗물이용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.

**제8조 (계량기의 설치)** 빗물이용시설 사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빗물이용시설 계량기를 설치한 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계량기를 교체 또는 보수한 경우에도 같다.

**제9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수도시설과장 오 왕 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수도시설담당 정 규 광
	담당자 성명·전화	송 재 화 (행정 3661)

(별지 제1호서식)

##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(제5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건축장소						
2. 설계자		주 소 성 명 (전화번호)				
3. 건 축 물 개 요	건축물명칭			부지면적	m <sup>2</sup>	
	주요 용도			건축면적	m <sup>2</sup>	
	층 수	연 면 적	m <sup>2</sup>	급수관경	mm	
	구 조			공사종별	신축, 증축, 변경등	
4. 공사예정일		년 월 일	~	년 월 일		
5. 빗물이용 시설규모	공사비			용 도		
	시설 용량			일일 사용량		
	시설 면적					
	설치 위치					
6. 처리시설개요	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(첨부)					

「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빗물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\* 첨 부 : 빗물이용시설 관련 개략설계도.

년 월 일  
건축주 주 소  
성 명 (인)  
(전 화)

안 산 시 장 귀하

(별지 제2호서식)

##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(제5조제2항 관련)

시설 설치자	주 소			
	성 명			
	연락처	(전화)		
시설 설치내역	시설 위치			
	시설 용량	㎥/일		
	사용 용도			
	설치 비용	원		
	착공 일자		완료 일자	
「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합니다.				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				
안산시장(인)				

(별지 제3호서식)

## 수도요금 감면신청서(제6조제1항 관련)

신청인	주 소			전화번호	
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
수도수전현황	수용가 번호				
	구 경	mm	업 종		
빗물사용현황	시설위치			시설용량	
	사용용도			빗물이용시설 설치년월일	
<p>「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					
신청인			(서명 또는 날인)		
안산시장 귀하					